

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2>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td> </tr> <tr> <td>운송관련 서비스업</td> <td>52915 주차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주점업</td> <td>5621 주점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금융 및 보험업</td> <td>64 금융업</td> </tr> <tr> <td>65 보험 및 연금업</td> </tr> <tr> <td>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부동산업</td> <td>68 부동산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전문서비스업</td> <td>711 법무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td> </tr> <tr> <td>교육 서비스업</td> <td>855 일반 교습학원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86 보건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오락관련 서비스업</td> <td>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91291 무도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td>9611 이용 및 미용업</td> </tr> <tr> <td>96122 마사지업</td> </tr> <tr> <td>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<신 설>		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	주점업	5621 주점업	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	65 보험 및 연금업	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부동산업	68 부동산업	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	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<신 설>		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	보건업	86 보건업	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91 무도장 운영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	96122 마사지업	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<p><별표2>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문 소매업</td> <td>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</td> </tr> <tr> <td>운송관련 서비스업</td> <td>52915 주차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주점업</td> <td>5621 주점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금융 및 보험업</td> <td>64 금융업</td> </tr> <tr> <td>65 보험 및 연금업</td> </tr> <tr> <td>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부동산업</td> <td>68 부동산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전문서비스업</td> <td>711 법무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731 수의업</td> </tr> <tr> <td>교육 서비스업</td> <td>855 일반 교습학원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86 보건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오락관련 서비스업</td> <td>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>91291 무도장 운영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td>9611 이용 및 미용업</td> </tr> <tr> <td>96122 마사지업</td> </tr> <tr> <td>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	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	주점업	5621 주점업	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	65 보험 및 연금업	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부동산업	68 부동산업	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	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731 수의업	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	보건업	86 보건업	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91 무도장 운영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	96122 마사지업	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- 지원대상 제외업종 추가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점업	5621 주점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 보험 및 연금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업	68 부동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86 보건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1291 무도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6122 마사지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점업	5621 주점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 보험 및 연금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업	68 부동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31 수의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86 보건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1291 무도장 운영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6122 마사지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부 칙 <2024. 12. 19.>		- 부칙 신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